

(12)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공개된 국제출원

(1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

(43) 국제공개일
2016년 1월 7일 (07.0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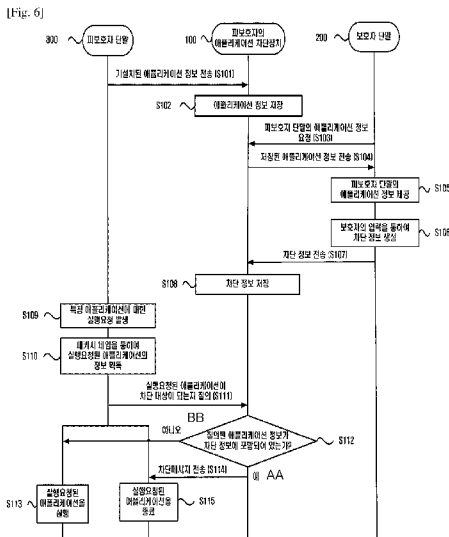
(10) 국제공개번호
WO 2016/002996 A1

- (51) 국제특허분류: G06F 21/50 (2013.01)
- (21) 국제출원번호: PCT/KR2014/006071
- (22) 국제출원일: 2014년 7월 7일 (07.07.2014)
- (25) 출원언어: 한국어
- (26) 공개언어: 한국어
- (30) 우선권정보: 10-2014-0083114 2014년 7월 3일 (03.07.2014) KR
- (71) 출원인: 플러스기술 주식회사 (PLUSTECH INC.) [KR/KR]; 135-539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길 10, 3층 (수서동, 현대벤처빌), Seoul (KR).
- (72) 발명자: 천세은 (CHEON, Seun); 135-539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길 10, 3층 (수서동, 현대벤처빌), Seoul (KR). 이창배 (LEE, Chang bae); 135-539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길 10, 3층 (수서동, 현대벤처빌), Seoul (KR).
- (74) 대리인: 특허법인 아이스퀘어 (ISQUARE PATENT & LAW FIRM); 135-502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2길 11, 도원빌딩 6층 (대치동), Seoul (KR).
- (81) 지정국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국내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AE, AG, AL, AM, AO, AT, AU, AZ, BA, BB, BG, BH, BN, BR, BW, BZ, CA, CH, CL, CN, CO, CR, CU, CZ, DE, DK, DM, DO, DZ, EC, EE, EG, ES, FI, GB, GD, GE, GH, GM, GT, HN, HR, HU, ID, IL, IN, IR, IS, JP, KE, KG, KN, KP, KZ, LA, LC, LK, LR, LS, LT, LU, LY, MA, MD, ME, MG, MK, MN, MW, MX, MY, MZ, NA, NG, NI, NO, NZ, OM, PA, PE, PG, PH, PL, PT, QA, RO, RS, RU, RW, SA, SC, SD, SE, SG, SK, SL, SM, ST, SV, SY, TH, TJ, TM, TN, TR, TT, TZ, UA, UG, US, UZ, VC, VN, ZA, ZM, ZW.
- (84) 지정국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국내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ARIPO (BW, GH, GM, KE, LR, LS, MW, MZ, NA, RW, SD, SL, SZ, TZ, UG, ZM, ZW), 유라시아 (AM, AZ, BY, KG, KZ, RU, TJ, TM), 유럽 (AL, AT, BE, BG, CH, CY, CZ, DE, DK, EE, ES, FI, FR, GB, GR, HR, HU, IE, IS, IT, LT, LU, LV, MC,

[다음 쪽 계속]

(54) Title: METHOD AND DEVICE FOR BLOCKING WARD'S APPLICATION, AND GUARDIAN TERMINAL, WARD TERMINAL, GUARDIAN-SIDE COMPUTER PROGRAM, AND WARD-SIDE COMPUTER PROGRAM FOR BLOCKING WARD'S APPLICATION

(54) 발명의 명칭 :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및 차단장치,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피보호자 단말, 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 및 피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



100 ... Device for blocking ward's application
 200 ... Guardian terminal
 300 ... Ward terminal
 S101 ... Transmit pre-installed application information
 S102 ... Store application information
 S103 ... Request application information of ward's terminal
 S104 ... Transmit stored application information
 S105 ... Provide application information of ward's terminal
 S106 ... Generate blocking information through input by guardian
 S107 ... Transmit blocking information
 S108 ... Store blocking information
 S109 ... Execution request for particular application occurs
 S110 ... Acquire information on execution-requested application through package name
 S111 ... Inquire whether execution-requested application is to be blocked
 S112 ... Is requested application information included in blocking information?
 S113 ... Execute execution-requested application
 S114 ... Transmit blocking message
 S115 ... Terminate execution-requested application
 AA ... Yes
 BB ... No

(57) Abstract: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llows a parent to directly check an application installed on a child's terminal and to directly select an application of which execution by a child is to be blocked. At this time, when a child tries to execute the application, the execution of which is configured to be blocked by the parent, the execution of the application is blocked, so that the execution of an appointed application can be basically blocked. Further,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blocks a child from executing a particular application during only a particular time while allowing the child to execute the particular application during the other time, thereby enabling configuration of application blocking information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nd the parent.

(57) 요약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부모가 직접 자녀 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조회하도록 하여, 자녀의 실행을 차단할 애플리케이션 대상을 부모가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부모에 의해 실행 차단되도록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녀가 실행하였을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차단되므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자녀가 실행 차단 당하고 다른 일부 시간 동안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와 부모의 특성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차단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WO 2016/002996 A1

MK, MT, NL, NO, PL, PT, RO, RS, SE, SI, SK, SM, 공개:
TR), OAPI (BF, BJ, CF, CG, CI, CM, GA, GN, GQ, GW, —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조약 제 21 조(3))
KM, ML, MR, NE, SN, TD, TG).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및 차단장치,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피보호자 단말, 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 및 피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분야

- [1] 본 발명은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피보호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격으로 차단하기 위한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및 차단장치,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피보호자 단말, 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 및 피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 [2] 최근들어,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단말의 활성화와 콘텐츠의 제공 통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 교육,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동영상 사이트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많이 보급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 [3]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게임이나 유해 애플리케이션(예를 들어, 도박, 음란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접하였을 때,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는 이러한 게임이나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4]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제제를 가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공개특허공보 제 10-2013-0101624호는 자녀가 유해 콘텐츠에 접속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부모 단말로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녀(즉, 미성년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5] 그러나 이러한 종래기술은 단순히 부모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에서 그치기 때문에, 자녀가 유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그 순간에는 자녀의 행동을 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원천적인 자녀의 행동 제제가 불가능하다.
- [6] 따라서 상술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 [7] 한편, 전술한 배경기술은 발명자가 본 발명의 도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거나, 본 발명의 도출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정보로서, 반드시 본 발명의 출원 전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공지기술이라 할 수는 없다.
- [8]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9]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부모가 직접 자녀 단말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차단이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자녀 단말에서의 실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0]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자녀가 이용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차단시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자녀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 동안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 수단

[11]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 1 측면에 따르면,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피보호자 단말 내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b)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음에 따라, 상기 보호자에게 상기 추출된 피보호자 단말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중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및 (d)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제어 모듈로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차단메시지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12] 또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명칭 및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정보를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13] 또한, 상기 (b-1) 단계는, 상기 카테고리 중 하나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명칭과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14] 또한, 상기 (c) 단계의 차단정보는, 상기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및 상기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시간 또는 차단 요일을 포함하며, 상기 (d) 단계는, 상기 추출된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명칭들 중 하나와 대응하며,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시각 또는 요일이 상기 차단 시간 또는 차단 요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차단메시지를 제공한다.

[15] 또한, 상기 차단방법은, (e) 상기 (a) 단계에서 추출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중 유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검색되는 경우, 상기 검색된 애플리케이션이 유해 애플리케이션임을 나타내는 유해 앱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 [16] 또한, 상기 (b) 단계는, 상기 (e) 단계에서 생성된 유해 앱 정보와 상기 (a) 단계에서 추출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17] 또한, 상기 (d) 단계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 또는 상기 유해 앱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차단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18] 또한, 상기 (d) 단계의 차단메시지는,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네임에 대한 정보와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제어 모듈이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패키지네임을 통해 식별하고, 실행차단시키도록 하는 명령 정보를 포함한다.
- [19] 또한, 상기 (b-1) 단계는, 상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서 실행된 실행시간 정보를 추가로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20] 또한, 상기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f) 상기 (c) 단계 후,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새롭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g)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는 단계; 및 (h) 상기 (c) 단계의 차단정보를 기초로, 상기 새롭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여부 또는 차단 시간에 대한 설정을 추천하는 차단 추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 [21] 또한, 상기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i)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접근요청한 URL 주소 또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동영상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j) 상기 추출된 URL 주소 또는 동영상의 정보가 유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추출된 URL 주소 또는 동영상의 정보가 유해 콘텐츠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상기 피보호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 [22] 또한, 상기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k)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저장된 동영상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l)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저장된 동영상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음에 따라, 상기 보호자에게 상기 추출된 동영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m)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제공된 동영상의 정보 중 삭제 설정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및 (n) 상기 삭제 요청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의 푸시 알림이 제공되지 않는 형태의 삭제메시지를 상기 피보호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 [23] 한편, 본 발명의 제 2 측면에 따르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는,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음에 따라, 상기 보호자에게 상기 추출된 피보호자 단말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 상기 피보호자로부터 상기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중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정보를 입력받는 차단정보 입력부; 및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제어 모듈로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차단메시지를 제공하는 차단메시지 제공부;를 포함한다.

- [24] 또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명칭 및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정보를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25] 또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카테고리 중 하나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명칭과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26] 또한, 상기 차단정보는, 상기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및 상기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시간 또는 차단 요일을 포함하며, 상기 차단메시지 제공부는, 상기 추출된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명칭들 중 하나와 대응하며,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시각 또는 요일이 상기 차단 시간 또는 차단 요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차단메시지를 제공한다.
- [27] 또한, 상기 차단장치는,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에서 추출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중 유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검색되는 경우, 상기 검색된 애플리케이션이 유해 애플리케이션임을 나타내는 유해 앱 정보를 생성하는 유해 콘텐츠 판단부를 더 포함한다.
- [28] 또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유해 앱 정보와 상기 수신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29] 또한, 상기 차단메시지 제공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 또는 상기 유해 앱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차단메시지를 전송한다.
- [30] 또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피보호자 단말 내에서 실행된 실행시간 정보를 추가로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31] 또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새롭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한 후,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는 경우, 상기 차단정보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차단정보를 기초로, 상기 새롭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여부 또는 차단 시간에 대한 설정을 추천하는 차단 추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32] 한편, 본 발명의 제 3 측면에 따르는 보호자 단말은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로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피보호자 앱정보 요청부; 상기 차단장치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신하고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 및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차단 또는 차단시간을 설정하여 차단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차단장치로 전송하는 차단정보 전송부;를 포함한다.
- [33] 또한,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명칭 및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정보를 수신하고 표시한다.
- [34] 또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카테고리 및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적어도 하나의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선택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차단 설정 항목 및 차단시간 설정 항목을 표시한다.
- [35] 또한, 상기 차단정보 전송부는, 상기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보호자 단말 상에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시간 설정 항목 입력을 수신하고, 상기 차단 요일 및 차단 시간 설정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요일 및 차단 시간을 포함하는 차단정보를 생성한다.
- [36] 또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중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해 앱 정보를 수신한다.
- [37] 또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는, 상기 유해 앱 정보 수신 후,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상기 보호자 단말 상에 표시하되, 유해 카테고리를 포함시켜 표시하고, 상기 유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유해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표시하되, 이미 차단 설정이 되어 있도록 표시한다.
- [38] 한편, 본 발명의 제 4 측면에 따르는 피보호자 단말은,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중 피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요청을 입력받는 앱 실행요청 입력부;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 네임을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패키지 네임을 기초로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에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여부를 질의하는 앱실행 차단 판단부; 및 상기 차단장치로부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라는 차단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앱실행 차단부;를 포함한다.

- [39] 한편, 본 발명의 제 5 측면에 따르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호자 단말로 하여금, (a)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로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차단장치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c)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차단 또는 차단시간을 설정하여 차단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수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 [40] 한편, 본 발명의 제 6 측면에 따르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피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은, 피보호자 단말로 하여금, (a)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중 피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요청을 입력받는 단계; (b)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 이름을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패키지 이름을 기초로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에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여부를 질의하는 단계; 및 (c) 상기 차단장치로부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라는 차단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단계;를 수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 [41] 전술한 본 발명의 기술적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부모가 직접 자녀 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조회하도록 하여, 자녀의 실행을 차단할 애플리케이션 대상을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42] 또한, 본 발명의 기술적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부모에 의해 실행 차단되도록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녀가 실행하였을 경우, 실행 차단되도록 하여,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자녀가 원천적으로 실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다.
- [43] 또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자녀가 실행 차단 당하고 다른 일부 시간 동안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와 부모의 특성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차단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 [44] 본 발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45]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 [46]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의 구조 블록도이다.
- [47]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보호자 단말의 구조 블록도이다.
- [48] 도 4a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보호자 단말에 제공되는 피보호자 단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설정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예시이다.
- [49]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피보호자 단말의 구조 블록도이다.
- [50]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의 순서도이다.
- [51] 도 7및 도 8은 본 발명의 추가실시예에 따라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피보호자 단말, 보호자 단말에 추가로 포함되는 구성에 대한 블록도이다.

[52]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 [53]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 [54]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55]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다만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먼저 정의한다.
- [56]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단말, 전자단말 또는 테스트단말 상에서 실행되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응용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앱'이라고 호칭될 수도 있다.
- [57] '보호자'는 특정인에 대하여 사회적, 가족적, 법적, 도덕적으로 보호할 의무나 책임을 갖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같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8] '피보호자'는 상술한 보호자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보호자일 때 부모의 자녀(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피보호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9]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60]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시스템은,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이하, '차단장치'라고 함)(100), 보호자 단말(200), 피보호자 단말(300)을 포함한다.
- [61] 차단장치(100)와 단말들(200, 300)은 네트워크(N)를 통하여 연결된다. 네트워크(N)는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 광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 WAN), 부가가치 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개인 근거리 무선통신(Personal Area Network; PAN), 이동 통신망(mobile radio communication network),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Mobile WiMAX,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또는 위성 통신망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유/무선 네트워크로 구현될 수 있다.
- [62] 차단장치(100)는 보호자 단말(200)과 피보호자 단말(300) 사이를 중개하는 것으로, 보호자 단말(200)에 의하여 입력된 앱의 차단정보에 따라,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앱을 차단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 1에서 차단장치(100)는 원격지에 서버로서 단말들(200, 300)과 독립적으로 구현되어 단말들(200, 300)과 네트워크(N) 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것으로 구현되었으나, 이는 일 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차단장치(100)는 보호자 단말(200)이나 피보호자 단말(300) 내에 내장될 수도 있다.
- [63] 보호자 단말(200)은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앱들 중 전부 또는 일부 앱에 대하여 피보호자가 실행하지 못하도록 차단정보를 생성하여 차단장치(100)로 전송한다.
- [64] 피보호자 단말(300)은 보호자 단말(200)에 의해 생성된 차단정보에 따라, 특정 앱에 대한 피보호자의 실행요청이 있더라도, 실행요청된 앱의 실행을 차단함으로써 피보호자의 특정 앱 이용을 차단한다.
- [65] 예를 들어, 차단장치(100)는 피보호자 단말(300)로부터 피보호자 단말(300) 내에 설치된 앱 정보를 수집하여 보호자 단말(200)로 제공한다. 보호자는 자신의 단말(200)을 통하여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앱들을 확인하고, 선택한 앱에 대하여 차단정보를 설정한다. 설정된 차단정보는 차단장치(100)로 제공되어 저장될 수 있다. 피보호자 단말(300)에서 특정 앱에 대한 실행요청이 입력될 경우, 피보호자 단말(300)은 차단장치(100)에 저장된 차단정보를 확인하여 앱의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실행요청된 앱이 차단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호자 단말(300)은 실행요청된 앱의 실행을 차단할 수 있다.
- [66] 여기서, 단말(200, 300)은 네트워크(N)를 통해 원격지의 차단장치(100)에 접속하거나, 타 단말 및 차단장치(100)와 연결 가능한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 텔레비전으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하고, 휴대용 단말기는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스마트폰(Smart Phone), 모바일 WiMAX(Mobile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 TV(Internet Television), 지상파 TV, 케이블 TV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67]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피보호자의 앱 차단장치(100)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차단장치(100)는 서버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으나, 보호자 단말(200) 또는 피보호자 단말(300)에 포함되도록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앱 설치 프로그램이 어느 하나의 단말에 인코딩됨으로써, 단말 내에 포함된 프로세서 및 메모리가 기 설정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될 수 있다.
- [68] 차단장치(100)는 식별정보 저장부(110),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 차단정보 입력부(130), 차단메시지 제공부(140)를 포함한다.
- [69] 식별정보 저장부(110)는 피보호자 단말(300)과 보호자 단말(200) 간의 식별정보를 매칭 저장한다. 예를 들어, 식별정보는 피보호자 단말(300)과 보호자 단말(200)의 단말식별정보(예를 들어, 단말의 IP 주소)나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개인식별정보(예를 들어, 차단장치(100)에 접속할 때 이용하는 아이디)가 될 수 있다. 보호자 단말(200)로부터 피보호자 단말(300)의 정보 요청이 수신될 때, 차단장치(100)는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를 함께 수신하며,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와 대응하여 저장된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를 검색하여, 보호자 단말(200)로 해당하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는, 피보호자 단말(300)로부터 앱의 차단 여부에 대한 질의가 수신될 때, 차단장치(100)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를 함께 수신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보호자 단말(300)에 대응하는 보호자 단말(200)이 전송한 차단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차단정보를 바탕으로 피보호자 단말(300)로 차단메시지를 제공하게 된다.
- [70]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는 보호자 단말(200)로부터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앱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음에 따라, 보호자 단말(200)로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는 피보호자 단말(300)로부터 기설치된 앱들에 대한 정보와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를 추출하고 매칭하여 저장한다. 앱 정보는 앱의 명칭, 카테고리, 설치 날짜, 총 사용시간,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사용시간, 패키지네임, 설치된 앱의 총 개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와 앱 정보는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가 피보호자 단말(300)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신함으로써 추출할 수 있다. 추후에, 보호자로부터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앱 정보 조회 요청을

입력받는 경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는 저장된 앱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가 보호자 단말(200)로부터 상기 요청과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와 매칭하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를 검색하고,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와 매칭 저장된 앱 정보를 검색하여 보호자 단말(200)로 전송한다.

[71] 차단정보 입력부(130)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에 대한 차단정보를 보호자로부터 입력받는다. 예를 들어, 차단정보 입력부(130)는 보호자 단말(200)로부터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와 상기 차단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신함으로써 입력받을 수 있다. 수신된 차단정보는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와 연관된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와 연계되어 저장된다. 차단정보는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앱들에 대한 식별정보(예를 들어, 명칭, 패키지네임, 카테고리 등), 지정된 앱의 실행 허용 여부, 실행 차단 여부, 실행 차단 시간(시각, 요일, 월, 년, 날짜를 포함)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차단정보는 A, B, C라는 앱에 대하여, A는 항상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B는 항상 차단되도록 설정되고, C는 12:00 ~ 20:00까지만 실행 차단되도록 설정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2] 차단메시지 제공부(140)는 피보호자 단말(300) 상에서 실행요청된 앱이 저장된 차단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실행 차단되도록 차단메시지를 피보호자 단말(300)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차단메시지 제공부(140)는 피보호자 단말(300)로부터 실행요청된 앱 정보를 추출한다(예를 들어, 앱 정보와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를 수신함으로써 추출한다). 차단메시지 제공부(140)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를 바탕으로 피보호자 단말(300)에 대응하는 차단정보를 검색한다. 검색된 차단정보는 보호자 단말(200)로부터 입력된 정보이다. 차단메시지 제공부(140)는 실행요청된 앱의 명칭 중 차단정보에 포함된 앱들의 명칭 중 하나와 대응하는지 판단하며, 대응하는 경우, 차단 여부 또는 차단 시간 설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차단정보가 해당 앱에 대하여 차단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 차단메시지 제공부(140)는 차단메시지를 피보호자 단말(300)로 제공한다. 또한, 차단정보가 해당 앱에 대하여 특정 시간 동안만 차단하는 것으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 차단메시지 제공부(140)는 앱이 실행요청된 시각을 파악하고, 파악된 시각이 차단 설정된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차단메시지를 피보호자 단말(300)로 제공한다. 차단메시지는 실행요청된 앱의 패키지네임에 대한 정보와 피보호자 단말(300)의 제어 모듈이 상기 앱을 패키지네임을 통해 식별하여 실행 차단시키도록 하는 명령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3] 한편,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는 추가적으로,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때, 차단 추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의 명칭, 카테고리, 배급사가 게임이나 도박, 음란물

등의 콘텐츠에 관한 것일 경우, 전체 차단 또는 일부 시간 동안의 차단을 추천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피보호자가 앱을 사용한 사용시간 정보와 앱의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전체 차단 또는 일부 시간 동안의 차단을 추천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보호자가 게임 앱을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용한 기록이 자주 나타난 경우,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게임 앱 이용에 대한 차단을 추천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74] 또는, 기존에 저장된 차단정보를 기초로 보호자 단말(200)이 차단하는 패턴을 파악하여 차단 추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 단말(200)로부터 전송된 차단정보가 복수의 게임 앱에 대하여 밤 12시 ~ 아침 8시까지 차단한 것을 나타내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피보호자 단말(300)에 새로운 게임 앱이 설치되고, 보호자 단말(200)이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하여 새로운 게임 앱 정보가 보호자 단말(200)로 전송되는 경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는 새로운 게임 앱에 대하여 밤 12시 ~ 아침 8시까지 차단을 추천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보호자의 차단 패턴이나 앱의 카테고리나 명칭, 또는 피보호자의 사용패턴을 파악하여, 보호자에게 차단 추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차단 추천 정보를 통해 차단 여부 설정에 대한 고민없이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75]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보호자 단말(200)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76] 보호자 단말(200)은 피보호자 앱정보 요청부(210),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220), 차단정보 전송부(230)를 포함한다. 상기 구성들은 피보호자의 앱 차단을 위한 보호자용 앱이 보호자 단말(200)에 설치됨으로써, 보호자 단말(200)의 프로세서 내에 구현될 수 있다.
- [77] 피보호자 앱정보 요청부(210)는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앱 정보를 차단장치(100)로 요청한다. 보호자가 상기 보호자용 앱을 실행하고,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관리 항목을 클릭할 경우, 피보호자 앱정보 요청부(210)는 상기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이때, 피보호자 앱정보 요청부(210)는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와 상기 요청을 함께 차단장치(100)로 전송한다. 이 경우, 차단장치(100)의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가 요청을 수신하고,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정보를 보호자 단말(200)로 전송한다.
- [78]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220)는 차단장치(100)로부터 수신한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정보를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 [79] 구체적으로, 도 4a를 참고하면, 먼저,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220)는 보호자 단말(200) 상에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의 카테고리, 개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220)가 수신한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정보는 앱의 명칭,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220)가 카테고리 별로 앱을 분류하고 개수 정보를 파악한 후, 보호자 단말(200) 상에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카테고리 별 앱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차단장치(100)로부터 전송되어 보호자 단말(200) 상에 그대로 표시될 수도 있다.

- [80] 이어서, 보호자가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을 선택할 경우, 도 4b와 같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앱들의 명칭과 각 앱에 대한 차단 설정 항목, 허용 설정 항목, 차단시간 설정 항목이 표시될 수 있다. 도 4b에서는 보호자가 “전체” 항목을 클릭한 경우를 도시한다. 보호자는 앱의 이름을 바탕으로 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허용/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81] 여기서,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상술한 차단장치(100)의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120)의 추가 기능에 따라, 피보호자의 앱 사용시간 정보, 차단 추천 정보가 보호자 단말(200) 상에 더 제공될 수 있다.
- [82] 차단정보 전송부(230)는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에 대한 차단정보를 생성하고 차단장치(100)로 전송한다.
- [83] 예를 들어, 도 4b에서 보호자는 “Dictionary”와 같은 앱은 교육용 앱에 대하여 항상 피보호자의 사용이 허용되도록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Racing game”과 같은 앱은 게임 앱이므로, 피보호자가 게임에 대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라면,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사용이 항상 차단되도록 체크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는 “DMB”와 같은 앱은 엔터테인먼트 앱이므로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사용은 피보호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시간 동안만 사용 차단되도록 체크할 수도 있다.
- [84] 여기서, “시간차단” 항목을 클릭할 경우, 차단정보 전송부(230)는 도 4c와 같은 시간 차단 설정 인터페이스를 보호자 단말(200) 상에 제공할 수 있다. 시간 차단 설정 인터페이스는 요일, 시각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4c에 도시된 바에 의할 때, 보호자는 “Racing game”에 대하여 월~금요일 동안 밤12시부터 아침 9시까지의 사용 차단 입력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일실시예에 지나지 않으며, 월, 년, 날짜 등에 대한 차단 시간 설정도 가능하다.
- [85] 차단정보 전송부(230)는 보호자가 입력한 사항을 바탕으로 차단정보를 생성하고, 차단정보와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를 차단장치(100)로 전송한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였을 때, 차단정보는 앱의 식별정보(예를 들어, 앱의 명칭 또는 앱의 패키지네임, 앱의 카테고리 등), 허용/차단/차단시간 설정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전송된 차단정보는 차단장치(100) 내에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와 함께 대응하여 저장된다.
- [86] 이어서, 도 5를 참조하여, 피보호자 단말(300)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87] 피보호자 단말(300)은 앱 실행요청 입력부(310), 앱실행 차단 판단부(320), 앱실행 차단부(330)를 포함한다. 상기 구성들은 피보호자의 앱 차단을 위한 피보호자용 앱이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됨으로써, 피보호자 단말(300)의 프로세서 내에 구현될 수 있다.

- [88] 앱 실행요청 입력부(310)는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어느 하나의 앱의 실행요청에 대한 입력을 수신한다. 예를 들어, 피보호자가 자신의 단말에 설치된 앱의 아이콘을 터치 입력할 경우, 앱 실행요청 입력부(310)는 해당 앱에 대한 실행요청 입력을 수신한다.
- [89] 앱실행 차단 판단부(320)는 실행요청된 앱에 대한 차단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앱실행 차단 판단부(320)는 실행요청된 앱에 대한 패키지네임을 획득한다. 앱실행 차단 판단부(320)는 획득한 패키지네임으로부터 실행요청된 앱의 정보(예를 들어, 앱의 명칭)를 파악하여 차단장치(100)에 상기 앱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차단 여부를 질의한다. 또는 앱실행 차단 판단부(320)는 획득한 패키지네임 자체를 차단장치(100)로 전송하여 차단 여부를 질의할 수 있다. 이때, 앱실행 차단 판단부(320)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 [90] 이 경우, 차단장치(100)의 차단메시지 제공부(140)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로부터 대응하는 차단정보를 검색하고, 차단정보 내에 수신된 앱의 정보(또는 앱의 패키지네임)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해당 앱의 차단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 [91] 앱실행 차단부(330)는 차단장치(100)로부터 차단메시지를 수신하여, 앱의 패키지네임을 통해 실행요청된 앱을 파악하고 실행요청된 앱의 실행을 차단시킬 수 있다. 앱실행 차단부(330)는 피보호자 단말(300) 내에 설치된 앱의 실행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제어 모듈로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앱실행 차단부(330)는 실행 차단과 함께, “해당 앱은 보호자의 차단 설정에 의하여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해당 앱은 보호자의 차단 설정에 의하여 현재 시각에서는 실행이 불가하며, 10 : 00 ~ 20 : 00 사이에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와 같은 차단정보 창을 제공할 수도 있다.
- [92] 한편, 차단 장치(100)의 차단 정보 입력부(130)가 차단 정보를 생성하자마자 곧바로 또는 주기적으로 피보호자 단말(300)로 차단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앱실행 차단 판단부(320)는 실행된 앱의 차단여부 판단을 서버로 질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피보호자 단말(300) 내에서 곧바로 판단하여, 실행된 앱의 차단을 수행할 수도 있다.
- [93]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시스템은 보호자가 원격으로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차단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자녀의 특성에 따라 일부 시간 동안만 차단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보호자가 오후나 밤 시간에는 게임 앱의 이용이 적으나, 새벽시간에 게임 앱의 이용이 잦아 늦잠을 자는 경우, 보호자는 새벽시간에만 게임 앱 이용이 차단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 [94] 이하, 도 6을 통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95] 먼저, 피보호자 단말(300)은 기설치된 앱 정보를 전송한다(S101). 여기서

전송되는 앱 정보는 피보호자 단말(300)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때의 초기 상태에 이미 설치된 앱을 제외한 앱 정보일 수 있다. 이때,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도 전송될 수 있다.

- [96] 차단장치(100)는 수신된 앱 정보를 저장한다(S102). 이때,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와 앱 정보가 매칭 저장될 수 있다. 한편,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는 보호자 단말(200)에서 보호자용 앱이 설치될 때 차단장치(100)로 전송되어 미리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 [97] 보호자 단말(200)은 피보호자 단말(300)에 설치된 앱 정보를 요청한다(S103). 이때, 보호자 단말(200)은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와 앱 정보 요청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 [98] 차단장치(100)는 수신된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와 매칭하는 앱 정보를 찾아, 보호자 단말(200)로 전송한다(S104).
- [99] 보호자 단말(200)은 표시 모듈을 통하여 수신된 앱 정보를 제공한다(S105). 도 4a 및 도 4b를 통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앱의 카테고리, 명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100] 이어서, 보호자 단말(200)은 보호자의 입력을 수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단정보를 생성한다(S106). 도 4c를 통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보호자 단말(200)은 특정 앱에 대한 허용/차단/차단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차단정보를 생성한다. 특히, 차단정보는 특정 앱에 대하여 항상 차단되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일부 시간 동안만 차단되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 [101] 보호자 단말(200)은 차단정보와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를 차단장치(100)로 전송하며(S107), 차단장치(100)는 수신된 차단정보와 보호자 단말(200)의 식별정보를 매칭하여 저장한다(S108).
- [102] 추후에, 피보호자 단말(300)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요청이 발생될 수 있다(S109).
- [103] 이 경우, 피보호자 단말(300)은 실행요청된 앱의 패키지네임을 획득할 수 있으며, 패키지네임을 통하여 어떠한 앱이 실행요청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S110).
- [104] 피보호자 단말(300)은 파악된 앱이 차단대상이 되는지 차단장치(100)로 질의한다(S111). 이때,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와 파악된 앱의 정보가 차단장치(100)로 전송된다.
- [105] 차단장치(100)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식별정보로부터 대응하는 차단정보를 검색하고, 질의된 앱의 정보가 차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한다(S112).
- [106] 만약, 차단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단장치(100)는 피보호자 단말(300)로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피보호자

단말(300)은 실행요청된 앱을 실행한다(S113).

[107] 반면, 차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차단장치(100)는 피보호자 단말(300)로 차단메시지를 전송한다(S114). 이어서, 피보호자 단말(300)은 차단메시지에 포함된 명령 정보에 따라 실행요청된 앱의 실행을 차단한다(S115).

[108] 이하, 도 7 및 도 8을 통하여 본 발명의 추가 실시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추가 실시예는 피보호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구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109] 도 7을 참조하면, 피보호자 단말(300)은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 유해 앱 차단부(350), 유해 동영상 차단부(360)를 더 포함하고,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100)는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 유해 앱 차단부(350), 유해 동영상 차단부(360)는 차단장치(100)에 포함되도록 구현되거나,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는 피보호자 단말(300)에 포함되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110]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는 피보호자 단말(300)이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피보호자 단말(300)에서 임의의 서버로 접속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는 해당 서버로 접근하기 위한 URL 주소를 추출한다. 이어서,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는 추출된 URL 주소가 유해 사이트의 URL 주소인지 차단장치(100)로 질의한다. 차단장치(100)의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는 유해 데이터베이스(미도시; 차단장치(100)에 포함되거나 별개의 서버로 구성될 수 있음)에 저장된 유해 URL 주소와 질의 요청된 URL 주소를 비교하여 질의 요청된 URL 주소가 유해 사이트의 주소인지 판단한다. 유해 사이트의 주소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는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로 유해 사이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는 피보호자 단말(300) 상에 사이트 접근이 차단되었음을 알리는 차단 창을 제공할 수 있다. 차단 창은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 또는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에서 생성된 별도의 차단 패킷을 수신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또는,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가 미리 저장된 차단 창 정보를 피보호자 단말(300)의 표시 모듈로 제공할 수 있다.

[111] 유해 앱 차단부(350)는 피보호자 단말(300) 상에 설치된 유해 앱이 실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해 앱 차단부(350)는 피보호자 단말(300) 상에서 실행요청이 입력된 앱에 대한 패키지네임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피보호자가 특정 앱의 아이콘을 터치 입력한 경우, 유해 앱 차단부(350)는 상기 특정 앱의 패키지네임을 획득한다. 유해 앱 차단부(350)는 패키지네임을 통하여 상기 특정 앱의 명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상기 앱의 명칭을 차단장치(100)로 전송하거나, 상기 획득된 패키지네임을 차단장치(100)로 전송하여 질의할 수 있다. 차단장치(100)의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는 패키지네임이나 앱의 명칭이 유해 앱을 나타내는 것인지 유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유해 앱이라고 판단된 경우,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는 유해

앱 차단부(350)로 질의 요청된 앱이 유해 앱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유해 앱 차단부(350)는 상기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질의 요청한 앱의 실행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유해 앱 차단부(350)는 상술한 차단 창을 피보호자 단말(300) 상에 제공할 수 있다.

- [112] 한편, 본 발명의 추가 실시예에 따를 때, 피보호자 단말(300)은 피보호자 단말(300) 상에 설치된 앱 정보를 미리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로 전송할 수 있으며,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는 피보호자 단말(300) 상의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앱 정보 중 유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앱이 존재하는 경우, 유해 앱 정보를 미리 생성한다. 그리고, 보호자 단말(200)로부터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조회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유해 앱 정보와 피보호자 단말(300)의 앱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4a와 같이, 유해 앱 정보 역시 카테고리 별로 분류되어 보호자 단말(200) 상에 표시될 수 있다. 또한, 피보호자 단말(300)에서 실행요청된 앱이 유해 앱 정보와 차단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차단메시지가 피보호자 단말(300)로 전송될 수 있다.
- [113] 한편, 유해 사이트 차단부(340) 및 유해 앱 차단부(350)는 피보호자 단말(300)에서 유해 사이트로의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와 유해 앱 실행이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차단 횟수를 카운팅하고 저장한다. 그리고 저장된 차단 횟수를 차단장치(100)로 전송하며, 차단장치(100)는 보호자 단말(200)로 제공함으로써, 보호자가 유해 사이트 차단 횟수 및 유해 앱 차단 횟수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 [114] 유해 동영상 차단부(360)는 피보호자 단말(300) 내에 저장된 유해 동영상의 재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해 동영상 차단부(360)는 피보호자 단말(300)에 다운로드된 모든 동영상 정보(예를 들어, 동영상 이름, 동영상 다운로드 주소, 동영상 획득경로, 동영상 썸네일 정보 등)를 획득한다. 추후에 어느 한 동영상에 대한 재생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재생요청이 발생된 동영상 정보를 차단장치(100)로 전송하여 유해 동영상인지 질의한다. 차단장치(100)의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는 유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전송받은 동영상이 유해 동영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의 이름에 성인물, 도박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동영상 다운로드 주소가 유해 사이트로 분류된 것인 경우, 동영상 썸네일 정보가 유해물인 경우, 유해 동영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해 동영상 차단부(360)는 판단결과 메시지를 유해 콘텐츠 판단부(150)로부터 수신하며, 판단결과 메시지가 유해 동영상임을 나타내는 경우, 재생요청된 동영상의 실행을 차단시킨다. 또한, 차단 후 별도로 차단 창을 제공할 수도 있다.
- [115] 도 8을 참조하면, 차단장치(100)는 피보호자 동영상 관리부(150)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보호자 단말(200)은 피보호자 동영상 제공부(240), 피보호자 동영상 삭제 요청부(250)를 더 포함할 수 있고, 피보호자 단말(300)은 동영상 삭제부(37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116] 피보호자 단말(300)의 동영상 삭제부(370)는 피보호자 단말(300)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들의 정보를 차단장치(100)로 전송한다. 또는, 피보호자 단말(300)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다운로드된 동영상들의 정보를 차단장치(100)로 전송할 수 있다. 전송되는 동영상 정보는 동영상 이름, 동영상 다운로드 주소, 동영상 획득경로, 동영상 썸네일 정보, 다운로드 날짜 등이 될 수 있다.
- [117] 차단장치(100)의 피보호자 동영상 관리부(150)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동영상 정보들을 수신하여 저장한다. 추후에, 보호자 단말(200)로부터 피보호자 단말(300)의 동영상 정보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저장된 동영상 정보들을 보호자 단말(200)로 제공할 수 있다.
- [118] 보호자 단말(200)의 피보호자 동영상 제공부(240)는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차단장치(100)로 피보호자 단말(300)의 동영상 정보를 요청하고, 수신하여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상기 리스트는 동영상의 이름, 다운로드 날짜, 다운로드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119] 보호자 단말(200)의 피보호자 동영상 삭제 요청부(250)는 제공된 리스트 중 보호자가 선택한 동영상에 대하여 삭제 요청 정보를 생성하고, 삭제 요청 정보를 차단장치(100)로 전송한다. 삭제 요청 정보는 삭제 요청된 동영상의 명칭 등에 대한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 [120] 피보호자 동영상 관리부(150)는 삭제 요청 정보를 수신한 후, 삭제 요청 정보를 삭제메시지에 포함시켜 피보호자 단말(300)로 전송한다. 삭제메시지는 GCM(Google Cloud Messaging for Android) 메시지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GCM 메시지는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 측에서는 메시지의 수신여부가 단말 상에 푸시 알림되지 않도록 전송되는 메시지 형태이다.
- [121] 동영상 삭제부(370)는 삭제메시지를 수신하고, 삭제메시지에 포함된 동영상 명칭을 통해 동영상을 식별하여, 식별된 동영상을 삭제한다.
- [122]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차단장치(100)는 피보호자 단말(300)의 위치추적모듈(예를 들어, GPS)을 통하여 피보호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최근 수시간 이내에서 피보호자가 이동한 장소의 목록에 대한 시간대별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 위치 정보와 함께 보호자 단말(200)로 제공할 수 있다. 보호자 단말(200)에서는 피보호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피보호자에게 비상상황이나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집된 위치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123] 이상으로 설명한,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가용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통신 매체는 전형적으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반송파와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의 기타 데이터, 또는 기타 전송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 [124]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계 명령어를 포함하고, 고레벨 프로그래밍 언어(High-level Programming Language),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어셈블리 언어 또는 기계 언어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예를 들어, 메모리, 하드디스크, 자기/광학 매체 또는 SSD(Solid-State Drive) 등)에 기록될 수 있다.
- [125] 따라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팅 장치에 의해 실행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컴퓨팅 장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와, 저장 장치와, 메모리 및 고속 확장포트에 접속하고 있는 고속 인터페이스와, 저속 버스와 저장 장치에 접속하고 있는 저속 인터페이스 중 적어도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성분들 각각은 다양한 버스를 이용하여 서로 접속되어 있으며, 공통 머더보드에 탑재되거나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장착될 수 있다.
- [126] 여기서 프로세서는 컴퓨팅 장치 내에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명령어로는, 예컨대 고속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디스플레이처럼 외부 입력, 출력 장치상에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하기 위한 그래픽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메모리나 저장 장치에 저장된 명령어를 들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서, 다수의 프로세서 및(또는) 다수의 버스가 적절히 다수의 메모리 및 메모리 형태와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는 독립적인 다수의 아날로그 및(또는) 디지털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칩들이 이루는 칩셋으로 구현될 수 있다.
- [127] 또한 메모리는 컴퓨팅 장치 내에서 정보를 저장한다. 일례로,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 유닛 또는 그들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예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 유닛 또는 그들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메모리는 예컨대, 자기 혹은 광 디스크와 같이 다른 형태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일 수도 있다.
- [128] 그리고 저장장치는 컴퓨팅 장치에게 대용량의 저장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저장 장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이거나 이런 매체를 포함하는 구성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SAN(Storage Area Network) 내의 장치들이나 다른 구성도 포함할 수 있고, 플로피 디스크 장치, 하드 디스크 장치, 광 디스크 장치, 혹은 테이프 장치, 플래시 메모리, 그와 유사한 다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 혹은 장치

어레이일 수 있다.

[129]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130]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131]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부모에 의해 실행 차단되도록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녀가 실행하였을 경우, 원격으로 자녀가 실행할 수 없도록 원격 차단함으로써, 자녀가 접근가능한 콘텐츠를 부모가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132]

청구범위

- [청구항 1]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피보호자 단말 내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b)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음에 따라, 보호자에게 상기 추출된 피보호자 단말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중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및
 (d)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제어 모듈로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차단메시지를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명칭 및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정보를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b-1) 단계는,
 상기 카테고리 중 하나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명칭과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의 차단정보는,
 상기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및 상기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시간 또는 차단 요일을 포함하며,
 상기 (d) 단계는,
 상기 추출된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명칭들 중 하나와 대응하며,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시각 또는

요일이 상기 차단 시간 또는 차단 요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차단메시지를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방법은,

(e) 상기 (a) 단계에서 추출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중 유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검색되는 경우, 상기 검색된 애플리케이션이 유해 애플리케이션임을 나타내는 유해 앱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e) 단계에서 생성된 유해 앱 정보와 상기 (a) 단계에서 추출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 또는 상기 유해 앱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차단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의 차단메시지는,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네임에 대한 정보와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제어 모듈이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패키지네임을 통해 식별하고, 실행차단시키도록 하는 명령 정보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b-1) 단계는,

상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서 실행된 실행시간 정보를 추가로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f) 상기 (c) 단계 후,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새롭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g)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는 단계; 및

(h) 상기 (c) 단계의 차단정보를 기초로, 상기 새롭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여부 또는 차단 시간에 대한 설정을 추천하는 차단 추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i)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접근요청한 URL 주소 또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동영상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j) 유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추출된 URL 주소 또는 동영상의 정보가 유해 콘텐츠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k) 상기 추출된 URL 주소 또는 동영상의 정보가 유해 콘텐츠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피보호자의 단말이 상기 추출된 URL 주소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상기 실행요청된 동영상이 실행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상기 피보호자의 단말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l) 상기 피보호자의 단말의 접근이 차단된 URL 주소 및 접근 차단된 횟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보호자의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은,

(m)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저장된 동영상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n)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저장된 동영상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음에 따라, 상기 보호자에게 상기 추출된 동영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o)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제공된 동영상의 정보 중 삭제 요청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및

(p) 상기 삭제 요청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의 푸시 알림이 제공되지 않는 형태의 삭제메시지를 상기 피보호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방법.

[청구항 14]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음에 따라,
 상기 보호자에게 상기 추출된 피보호자 단말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중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정보를 입력받는 차단정보 입력부; 및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제어 모듈로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차단메시지를
 제공하는 차단메시지 제공부;
 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명칭
 및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정보를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카테고리 중 하나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명칭과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정보는,
 상기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및
 상기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시간 또는
 차단 요일을 포함하며,
 상기 차단메시지 제공부는,
 상기 추출된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명칭들 중 하나와
 대응하며,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시각 또는
 요일이 상기 차단 시간 또는 차단 요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차단메시지를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장치는,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에서 추출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 중 유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검색되는 경우, 상기 검색된 애플리케이션이 유해 애플리케이션임을 나타내는 유해 앱 정보를 생성하는 유해 콘텐츠 판단부를 더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유해 앱 정보와 상기 수신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메시지 제공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 상에서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상기 차단정보 또는 상기 유해 앱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차단메시지를 전송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피보호자 단말 내에서 실행된 실행시간 정보를 추가로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22]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관리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새롭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한 후, 상기 보호자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 요청을 입력받는 경우,
상기 차단정보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차단정보를 기초로, 상기 새롭게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여부 또는 차단 시간에 대한 설정을 추천하는 차단 추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

[청구항 23]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로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피보호자 앱정보 요청부;
상기 차단장치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신하고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 및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차단 또는 차단시간을 설정하여 차단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차단장치로 전송하는 차단정보 전송부;

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명칭 및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정보를 수신하고 표시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카테고리 및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적어도 하나의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선택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명칭, 차단 설정 항목 및 차단시간 설정 항목을 표시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정보 전송부는,
상기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보호자 단말 상에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시간 설정 항목 입력을 수신하고, 상기 차단 요일 및 차단 시간 설정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요일 및 차단 시간을 포함하는 차단정보를 생성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중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해 앱 정보를 수신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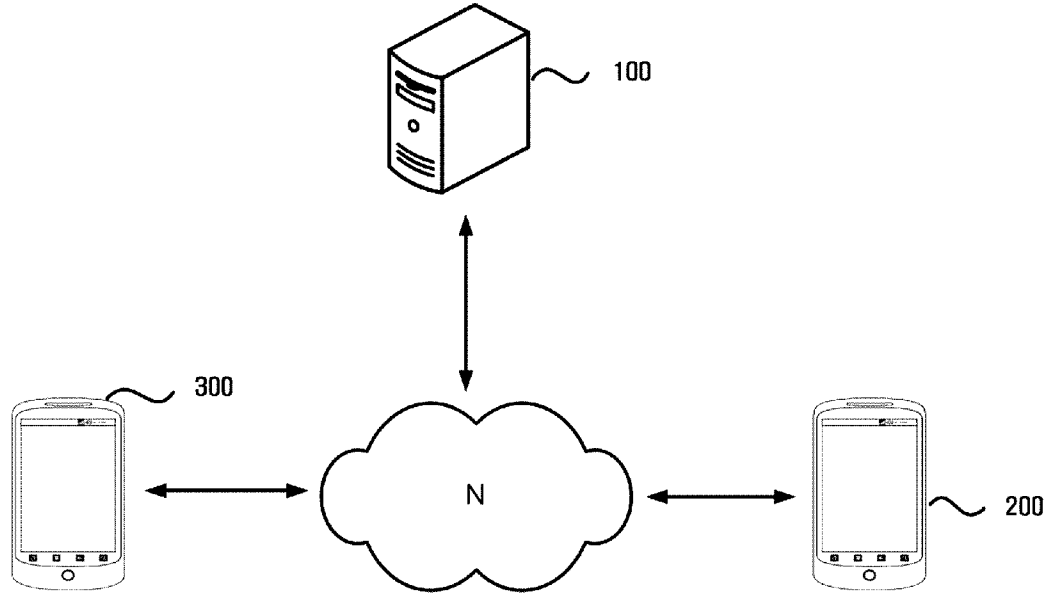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 앱정보 제공부는,
상기 유해 앱 정보 수신 후,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상기 보호자 단말 상에 표시하되, 유해 카테고리를 포함시켜 표시하고, 상기 유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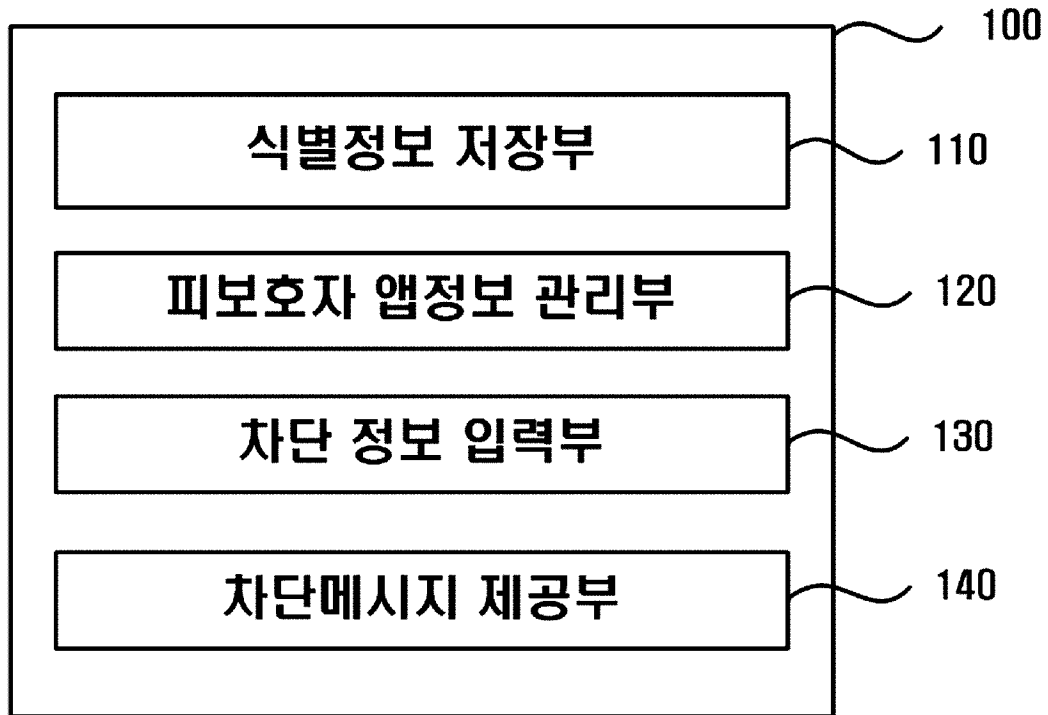
-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표시하되, 이미 차단 설정이 되어 있도록 표시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단말.
- [청구항 29]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중 피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요청을 입력받는 앱 실행요청 입력부;
-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 이름을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패키지 이름을 기초로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에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여부를 질의하는 앱실행 차단 판단부; 및
- 상기 차단장치로부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라는 차단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앱실행 차단부;
- 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피보호자 단말.
- [청구항 30]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호자 단말로 하여금,
- (a)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로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단계;
- (b) 상기 차단장치로부터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 (c)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차단 또는 차단시간을 설정하여 차단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 를 수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
- [청구항 31]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피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피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은,
- 피보호자 단말로 하여금,
- (a) 상기 피보호자 단말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중 피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요청을 입력받는 단계;
- (b)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 이름을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패키지 이름을 기초로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장치에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여부를 질의하는 단계; 및
- (c) 상기 차단장치로부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라는 차단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실행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단계;
를 수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피보호자측 컴퓨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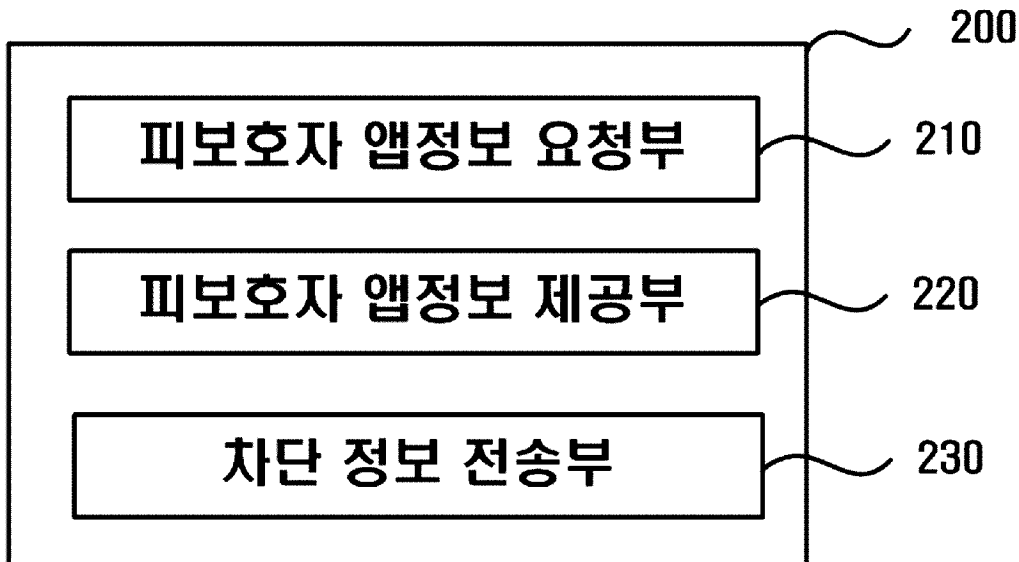
[Fig. 1]



[Fig. 2]



[Fig. 3]



[Fig. 4a]

Category		Number
전체		36
교육		1
생활		14
엔터테인먼트		5
커뮤니티		7
게임		3
기타		3
유해		3

10:10 PM

사용 관리

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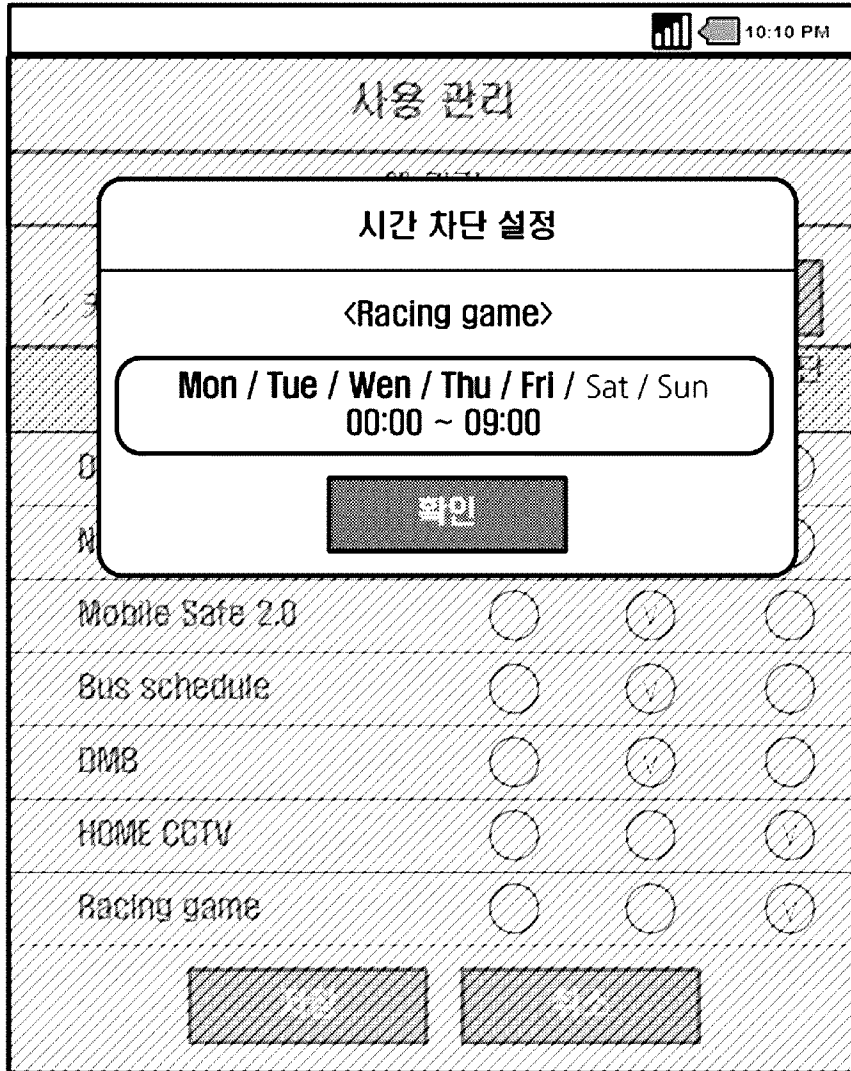
○ 카테고리별 앱 현황

시간 차단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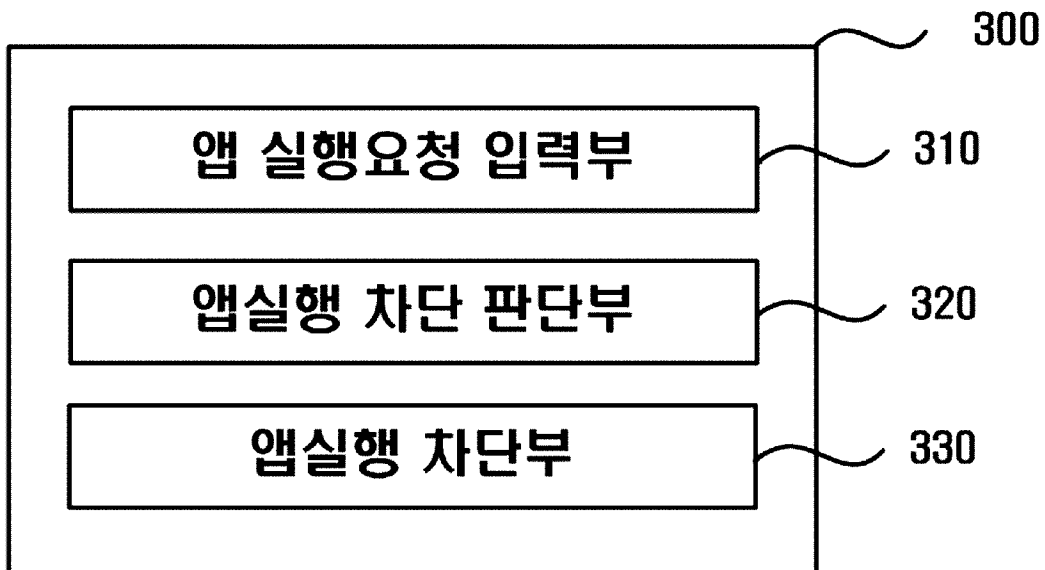
[Fig. 4b]

[전체] 앱 이름				허용 <input type="checkbox"/>	시간차단 <input type="checkbox"/>	차단 <input type="checkbox"/>
Dictionary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aviga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Mobile Safe 2.0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us schedu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MB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HOME CCTV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Racing gam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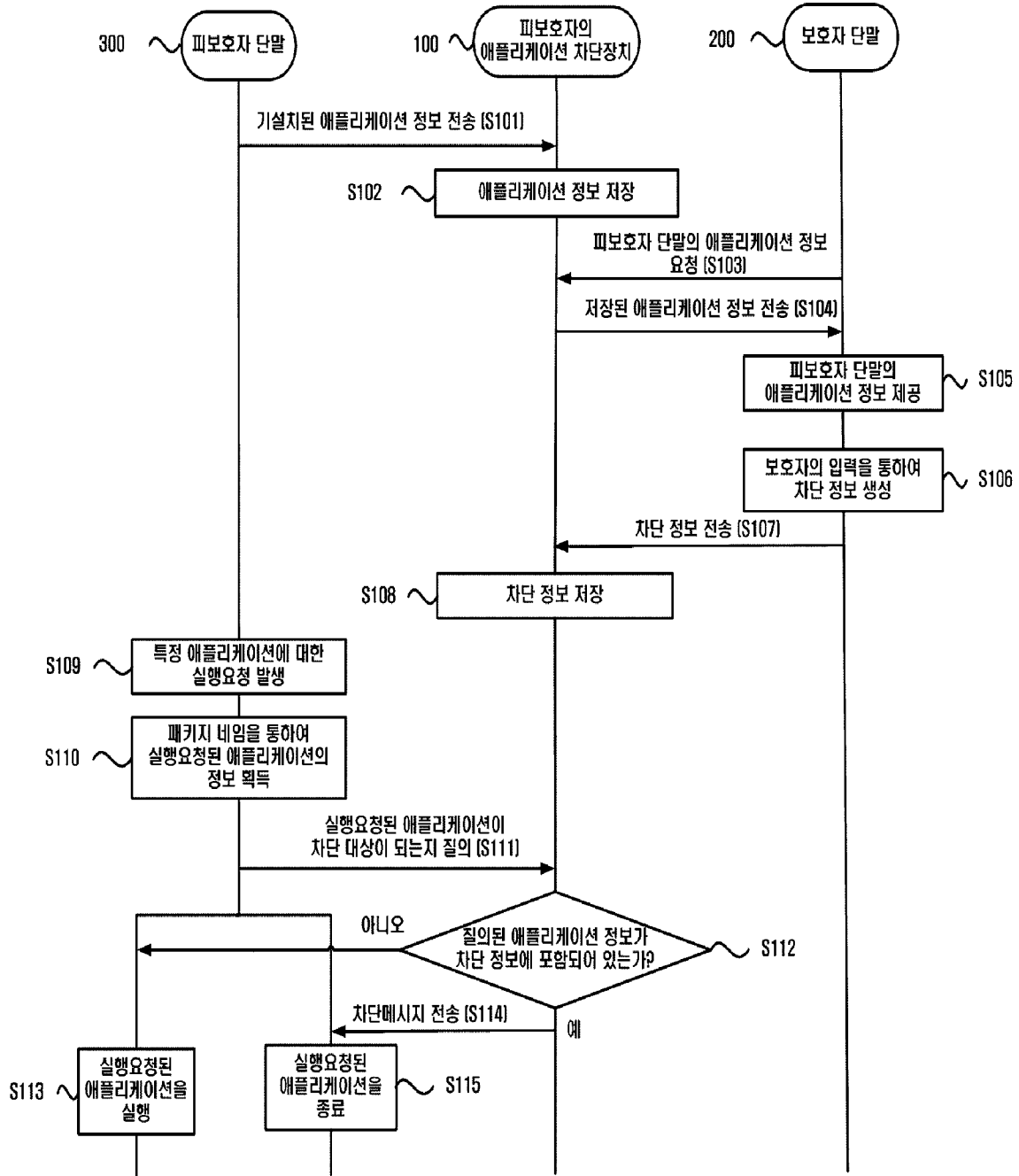
[Fig. 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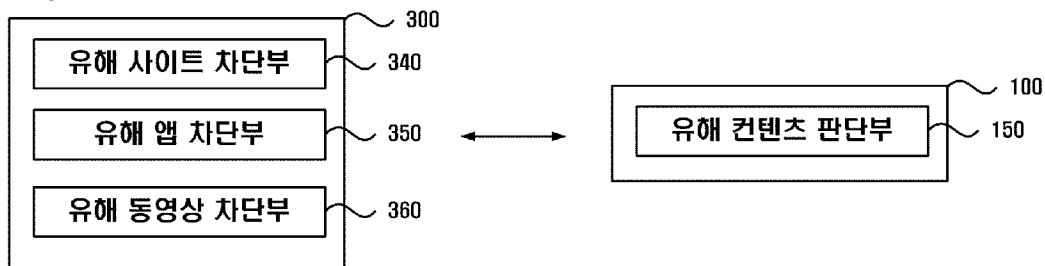
[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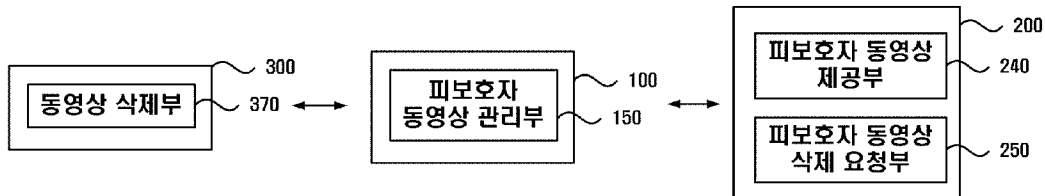
[Fig. 6]



[Fig. 7]



[Fig. 8]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2014/006071

A. CLASSIFICATION OF SUBJECT MATTER

G06F 21/50(2013.01)i

According to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or to both national classification and IPC

B. FIELDS SEARCHED

Minimum documentation searched (classification system followed by classification symbols)

G06F 21/50; G06F 21/30; G06F 11/34; G06F 21/20; G06F 21/60; G06F 21/22; G06F 21/00

Documentation searched other than minimum documentation to the extent that such documents are included in the fields searched

Korean Utility models and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s: IPC as above

Japanese Utility models and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s: IPC as above

Electronic data base consulted during the international search (name of data base and, where practicable, search terms used)

eKOMPASS (KIPO internal) & Keywords: guardian, ward, application, inquiry, block

C. DOCUMENTS CONSIDERED TO BE RELEVANT

Category*	Citation of document, with indication, where appropriate, of the relevant passages	Relevant to claim No.
X	KR 10-2013-0101624 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16 September 2013 See paragraphs [0028]-[0076] and figures 1-2, 5-6.	23-24,27-28,30
Y		25-26
A		1-22,29,31
Y	KR 10-2013-0116458 A (KT CORPORATION et al.) 24 October 2013 See paragraphs [0024]-[0033] and figures 2-3.	25-26
A	KR 10-1204376 B1 (CALAB) 23 November 2012 See paragraphs [0025]-[0039] and figures 3-4b.	1-31
A	WO 2010-038650 A1 (NEC CORP.) 08 April 2010 See paragraphs [0048]-[0064] and figure 6.	1-31
A	US 2013-0031601 A1 (BOTT, Ross) 31 January 2013 See paragraphs [0396]-[0407] and figures 6a-6b.	1-31



Further documents are listed in the continuation of Box C.



See patent family annex.

* Special categories of cited documents:

"A" document defining the general state of the art which is not considered to be of particular relevance

"E" earlier application or patent but published on or after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L" document which may throw doubts on priority claim(s) or which is cited to establish the publication date of another citation or other special reason (as specified)

"O" document referring to an oral disclosure, use, exhibition or other means

"P" document published prior to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but later than the priority date claimed

"I" later document published after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or priority date and not in conflict with the application but cited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r theory underlying the invention

"X" document of particular relevance; the claimed invention cannot be considered novel or cannot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when the document is taken alone

"Y" document of particular relevance; the claimed invention cannot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when the document is combined with one or more other such documents, such combination being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 document member of the same patent family


Date of the actual complet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

22 MARCH 2015 (22.03.2015)

Date of mailing of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25 MARCH 2015 (25.03.2015)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ISA/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Seonsa-ro, Daejeon 302-701,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42-472-7140

Authorized officer

Telephone No.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2014/006071

Box No. II Observations where certain claims were found unsearchable (Continuation of item 2 of first sheet)

This international search report has not been established in respect of certain claims under Article 17(2)(a) for the following reasons:

1. Claims Nos.:
because they relate to subject matter not required to be searched by this Authority, namely:

2. Claims Nos.:
because they relate to par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at do not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quirements to such an extent that no meaningful international search can be carried out, specifically:

3. Claims Nos.:
because they are dependent claims and are not drafted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and third sentences of Rule 6.4(a).

Box No. III Observations where unity of invention is lacking (Continuation of item 3 of first sheet)

This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found multiple inventions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follows:

The invention of group 1: claims 1-13 and 14-22 pertain to a method and a device for blocking the execution of an application of a ward by receiving blocking information on an application set by a guardian to block the use of the ward.

The invention of group 2: claims 23-28 and 30 pertain to a device and a program for setting whether to block an application of a ward according to the input of a guardian, or for blocking time.

The invention of group 3: claims 29 and 31 pertain to a device and a program for blocking the execution of an application of a ward according to the package name of the application.

1. As all required additional search fees were timely paid by the applicant, this international search report covers all searchable claims.
2. As all searchable claims could be searched without effort justifying additional fees, this Authority did not invite payment of additional fees.
3. As only some of the required additional search fees were timely paid by the applicant, this international search report covers only those claims for which fees were paid, specifically claims Nos.:

4. No required additional search fees were timely paid by the applicant. Consequently, this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s restricted to the invention first mentioned in the claims; it is covered by claims Nos.:

Remark on Protest

- The additional search fees were accompanied by the applicant's protest and, where applicable, the payment of a protest fee.
- The additional search fees were accompanied by the applicant's protest but the applicable protest fee was not paid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in the invitation.
- No protest accompanied the payment of additional search fees.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nformation on patent family member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2014/006071

Patent document cited in search report	Publication date	Patent family member	Publication date
KR 10-2013-0101624 A	16/09/2013	US 2013-0218891 A1	22/08/2013
KR 10-2013-0116458 A	24/10/2013	CN 104335198 A TW 201346627 A WO 2013-147421 A1	04/02/2015 16/11/2013 03/10/2013
KR 10-1204376 B1	23/11/2012	NONE	
WO 2010-038650 A1	08/04/2010	CN 102171703 A EP 2333690 A1 JP 05522542 B2 US 2011-0176451 A1 US 8681700 B2 WO 2010-038650 A1	31/08/2011 15/06/2011 18/06/2014 21/07/2011 25/03/2014 08/04/2010
US 2013-0031601 A1	31/01/2013	EP 2737732 A2 EP 2737732 A4 EP 2737733 A2 EP 2737741 A1 EP 2737742 A1 US 2013-0031191 A1 US 2013-0031599 A1 US 2013-0031600 A1 US 2015-032890 A1 WO 2013-015994 A1 WO 2013-015995 A1 WO 2013-016663 A2 WO 2013-016663 A3 WO 2013-016666 A2 WO 2013-016666 A3	04/06/2014 18/02/2015 04/06/2014 04/06/2014 04/06/2014 31/01/2013 31/01/2013 31/01/2013 29/01/2015 31/01/2013 31/01/2013 31/01/2013 18/04/2013 31/01/2013 04/04/2013

A.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류(국제특허분류(IPC))
G06F 21/50(2013.01)i

B. 조사된 분야
조사된 최소문헌(국제특허분류를 기재)
G06F 21/50; G06F 21/30; G06F 11/34; G06F 21/20; G06F 21/60; G06F 21/22; G06F 21/00

조사된 기술분야에 속하는 최소문헌 이외의 문헌
한국등록실용신안공보 및 한국공개실용신안공보: 조사된 최소문헌란에 기재된 IPC
일본등록실용신안공보 및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조사된 최소문헌란에 기재된 IPC

국제조사에 이용된 전산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의 명칭 및 검색어(해당하는 경우))
eKOMPASS(특허청 내부 검색시스템) & 키워드: 보호자, 피보호자, 애플리케이션, 조회, 차단

C. 관련 문헌

카테고리*	인용문헌명 및 관련 구절(해당하는 경우)의 기재	관련 청구항
X	KR 10-2013-0101624 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09.16 단락 [0028]-[0076] 및 도면 1-2, 5-6 참조.	23-24, 27-28, 30
Y		25-26
A		1-22, 29, 31
Y	KR 10-2013-0116458 A (주식회사 케이티 외 1) 2013.10.24 단락 [0024]-[0033] 및 도면 2-3 참조.	25-26
A	KR 10-1204376 B1 (사이버중독연구소 주식회사) 2012.11.23 단락 [0025]-[0039] 및 도면 3-4b 참조.	1-31
A	WO 2010-038650 A1 (NEC CORP.) 2010.04.08 단락 [0048]-[0064] 및 도면 6 참조.	1-31
A	US 2013-0031601 A1 (ROSS BOTT) 2013.01.31 단락 [0396]-[0407] 및 도면 6a-6b 참조.	1-31

추가 문헌이 C(계속)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응특허에 관한 별지를 참조하십시오.

* 인용된 문헌의 특별 카테고리:
 “A”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기술수준을 정의한 문헌
 “E” 국제출원일보다 빠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나 국제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선출원 또는 특허 문헌
 “L” 우선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또는 다른 인용문헌의 공개일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이유를 명시)를 밝히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
 “O” 구두 개시, 사용, 전시 또는 기타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
 “P” 우선일 이후에 공개되었으나 국제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헌
 “T”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출원과 상충하지 않으며 발명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인용된 문헌
 “X”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 하나만으로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Y”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문헌과 조합하는 경우로 그 조합이 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 청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동일한 대응특허문헌에 속하는 문헌

국제조사의 실제 완료일 2015년 03월 22일 (22.03.2015)	국제조사보고서 발송일 2015년 03월 25일 (25.03.2015)
--	---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 번호 ++82 42 472 7140	심사관 안정환 전화번호 +82-42-481-8440
--	------------------------------------



제2기재란 일부 청구항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견(첫 번째 용지의 2의 계속)

PCT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본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1. 청구항:
이 청구항은 본 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 관련됩니다. 즉,
- 2. 청구항:
이 청구항은 유효한 국제조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국제출원의 부분과 관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3. 청구항:
이 청구항은 종속청구항이나 PCT규칙 6.4(a)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장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기재란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경우의 의견(첫 번째 용지의 3의 계속)

본 국제조사기관은 본 국제출원에 다음과 같이 다수의 발명이 있다고 봅니다.

제1군 발명: 청구항 1-13, 14-22는 보호자로부터 피보호자의 사용 차단이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정보를 입력받아,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차단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고,

제2군 발명: 청구항 23-28, 30은 보호자의 입력에 따라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여부 또는 차단시간을 설정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며,

제3군 발명: 청구항 29, 31은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 네임에 따라 피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차단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 1. 출원인이 모든 추가수수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였으므로, 본 국제조사보고서는 모든 조사 가능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추가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도 모든 조사 가능한 청구항을 조사할 수 있었으므로, 본 기관은 추가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 출원인이 추가수수료의 일부만을 기간 내에 납부하였으므로, 본 국제조사보고서는 수수료가 납부된 청구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출원인이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국제조사보고서는 청구범위에 처음 기재된 발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기재

- 출원인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료 납부(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추가수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 출원인의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수수료가 납부되었으나 이의신청료가 보정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특허문헌	공개일	대응특허문헌	공개일
KR 10-2013-0101624 A	2013/09/16	US 2013-0218891 A1	2013/08/22
KR 10-2013-0116458 A	2013/10/24	CN 104335198 A TW 201346627 A WO 2013-147421 A1	2015/02/04 2013/11/16 2013/10/03
KR 10-1204376 B1	2012/11/23	없음	
WO 2010-038650 A1	2010/04/08	CN 102171703 A EP 2333690 A1 JP 05522542 B2 US 2011-0176451 A1 US 8681700 B2 WO 2010-038650 A1	2011/08/31 2011/06/15 2014/06/18 2011/07/21 2014/03/25 2010/04/08
US 2013-0031601 A1	2013/01/31	EP 2737732 A2 EP 2737732 A4 EP 2737733 A2 EP 2737741 A1 EP 2737742 A1 US 2013-0031191 A1 US 2013-0031599 A1 US 2013-0031600 A1 US 2015-032890 A1 WO 2013-015994 A1 WO 2013-015995 A1 WO 2013-016663 A2 WO 2013-016663 A3 WO 2013-016666 A2 WO 2013-016666 A3	2014/06/04 2015/02/18 2014/06/04 2014/06/04 2014/06/04 2013/01/31 2013/01/31 2013/01/31 2015/01/29 2013/01/31 2013/01/31 2013/01/31 2013/04/18 2013/01/31 2013/04/04